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패션산업 진흥법안 검 토 보 고

〈 패션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90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총괄 검토	3
2. 조문별 검토	9
가. 목적,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9
나. 패션산업진흥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13
다. 전문인력 양성 등 패션산업 진흥시책	17
라. 업무의 위탁 및 공무원 의제	22
※ 참고자료	2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재원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2. 4.

다. 회부연월일 : 2025. 2.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내 패션시장 규모는 2020년 40.3조원에서 2022년 45.7조원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 뷰티, 음악에 이어 패션은 네 번째로 주목받는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의 패션 관련 정책은 제품 생산 위주의 산업정책에 치중되어 있어, 패션의 문화적 가치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패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 패션의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고, 세계 시장에 한국 패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 패션산업의 진흥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패션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패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의 성장을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며,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패션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4조).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패션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안 제5조).
- 라. 정부는 패션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연구 및 개발의 촉진, 창업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패션산업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0조).
- 바. 정부는 우리나라 패션의 우수성 홍보와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패션쇼, 박람회 개최·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 사. 정부는 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필요성

- 의류, 신발, 장신구 등 패션산업은 그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¹⁾ 제조업의 영역을 넘어 디자인, 예술, 한류 등과 결합하면서 음악, 음식, 뷰티 등에 이어 주목받는 한류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음.

[표 1] 한국패션시장 세분 시장별 규모 및 성장률 추이

(단위 : 원)

	2021년 실적	전년비	2022년 실적	전년비	2023년 실적	전년비	2024년 전망	전년비
전체규모	43조 5292억	8.0%	47조 910억	8.2%	48조 4167억	2.8%	49조 5544억	2.3%
캐주얼복	17조 4029억	11.5%	18조 4711억	6.1%	19조 5794억	6.0%	20조 4978억	4.7%
신발	6조 6681억	9.2%	7조 1625억	7.4%	7조 4029억	3.4%	7조 5033억	1.4%
스포츠복	5조 7896억	△3.2%	6조 5007억	12.3%	6조 7072억	3.2%	6조 9690억	3.9%
남성정장	4조 4536억	14.8%	4조 8260억	8.4%	4조 7028억	△2.6%	4조 7593억	1.2%
가방	2조 9385억	△4.1%	3조 4865억	18.7%	3조 5839억	2.8%	3조 6934억	3.1%
여성정장	3조 850억	15.6%	3조 1125억	0.9%	3조 2257억	3.6%	3조 2525억	0.8%
내의	2조 668억	△1.9%	2조 3387억	13.2%	2조 867억	△10.8%	1조 8421억	△11.7%
아동복	1조 1247억	23.3%	1조 1930억	6.1%	1조 1281억	△5.4%	1조 370억	△8.1%

출처 : 한국패션산업 빅데이터 트렌드 2024/트렌드리서치('24.6)

-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등을 통하여 의류, 잡화 등 패션 디

1)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패션시장 규모는 2023년 48.4조, 2024년에 49.5조로 추정됨.

자인 시제품 제작 지원, 파리 패션위크 패션쇼 개최 지원, 해외
쇼룸 입점 지원 등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표 2] 패션 분야 지원 현황

	예산 (단위:백만원)	사업수행 기관	주요내용(실적)
'23년	8,418	한국콘텐츠 진흥원, 한국패션 디자이너연합회 등	- 아이디어 기획 개발 지원 • 신진디자이너 브랜드 10개 선정, 엑셀러레이팅 교육과정 운영, 시제품 및 홍보 지원/참여 디자이너 브랜드 평균 매출 수혜 전 대비 69.4% 증가 - 창의브랜드 창작 지원 • 23개(의류 19개, 잡화3개) 시제품 제작 지원/매출액 20,591백만원 - 지속가능패션 제작 지원 • 19개 시제품 제작 지원/매출액 6,553백만원 - 해외 진출 지원 • 6개 브랜드 뉴욕 패션위크 패션쇼 개최 지원/177만 달러 계약 • 12개 브랜드 24회 해외 수주회 및 쇼룸 참가 지원/ 579만 달러 계약 • 10개 브랜드 해외 쇼룸 입점 지원/277만 달러 계약 • 패션코드 개최, 169개 브랜드 참가/362만 달러 계약
'24년	8,664	한국콘텐츠 진흥원, 한국패션 디자이너연합회 등	- 신진 디자이너 엑셀러레이팅 지원 • 신진디자이너 브랜드 10개 선정, 엑셀러레이팅 교육과정 운영, 시제품 및 홍보 지원/참여 디자이너 브랜드 평균 매출 수혜 전 대비 35% 증가 - 패션 디자인 시제품 제작 지원 • 22개(의류 20개, 잡화2개) 시제품 제작 지원/매출액 20,628백만원 - 지속가능패션 제작 지원 • 10개 시제품 제작 지원/참여 브랜드 매출액 수혜 전 대비 약 18% 증가 - 해외 진출 지원 • 6개 브랜드 뉴욕·파리 패션위크 패션쇼 개최 지원/613만 달러 계약 • 19개 브랜드 20회 해외 수주회 및 쇼룸 참가 지원/ 772만 달러 계약 • 21개 브랜드 해외 쇼룸 입점 지원/533만 달러 계약 • 패션코드 개최, 168개 브랜드 참가/352만 달러 계약
'25년	8,664	한국콘텐츠 진흥원, 한국패션 디자이너연합회 등	- 신진 디자이너 엑셀러레이팅 지원 • 신진디자이너 브랜드 12개 선정 예정, 엑셀러레이팅 교육과정 운영, 시제품 및 홍보 지원 - 패션 디자인 시제품 제작 지원 • 17개(의류 15개, 잡화2개) 시제품 제작 지원 - 지속가능패션 제작 지원 • 15개 시제품 제작 지원 - 해외 진출 지원 • 6개 브랜드 파리 패션위크 패션쇼 개최 지원 • 해외 수주회 및 쇼룸 참가 지원 • 21개 브랜드 해외 쇼룸 입점 지원 • 패션코드 개최

- 그런데 정부의 패션 관련 정책은 제품 생산 위주의 산업 정책에 치중되어 있어 패션의 문화적 가치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으로, 패션산업을 제조업의 영역을 넘어 문화·예술·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제정안은 패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 패션의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고, 세계 시장에 한국 패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 패션산업의 진흥과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단순 제조업의 영역이 아닌 창조적 결과물로서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갖는 패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패션산업만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패션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 업무의 중복 우려가 있으며 주된 소관 부처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나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별도로 입법할 필요성²⁾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심사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93)에서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패션산업을 K-콘텐츠와 연계하고, 문화적 가치 중심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내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영국, EU 등에서는 패션산업을 창조산업, 저작권 산업 분류에 포함시켜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산업 분야와 함께 같은 정책의 틀에서 육성하고 있음을 사례로 제시함.

[표 3] 창조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패션의 해외사례

영국 문화부(DCMS)의 창조산업 범위	유럽연합(EU)의 창조산업 범위
광고, 건축, 예술·골동품시장, 수공예, 디자인, 패션 , 영화 및 비디오, 음악,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TV와 라디오, 게임(비디오, 컴퓨터)	문학, 음악, 공연예술, 시각예술, 영화, 박물관·도서관, 유산서비스, 출판, 음향녹화, TV와 라디오, 게임(비디오·컴퓨터) 광고, 건축, 디자인, 패션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아래 조문별 검토 중 안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제정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섬유제조 산업 기반 조성을 소관으로 하며 이에 따라 다른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제정안은 보충적으로 적용됨을 밝히고 있는 만큼 소관에 관한 이견과 관련된 문제는 없다고 보임.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가 패션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디자인, 예술 등과 결합된 콘텐츠 산업으로 볼 수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영역이라는 의견을 제

시하고 있는바, 이 같은 의견은 타당해 보임. 종합해 보면 제정안이 특별법이 아님에 따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우선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관에 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법률 체계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은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① 기본계획 수립, ② 실태조사, ③ 전문인력의 양성, ④ 연구 및 개발 사업 촉진, ⑤ 창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 전시 및 홍보 지원, 금융 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인 산업진흥법의 구성과 비교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임.

패션산업 진흥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패션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실태조사)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연구 및 개발의 촉진)
제8조(창업 지원)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1조(전시 및 홍보 등)
제12조(금융 지원)
제13조(업무의 위탁 등)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칙
시행일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조부터 제3조까지)

1) 제정안 요지

- 패션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패션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패션, 패션산업, 패션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패션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름(안 제3조).

2)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패션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패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의 성장을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패션”이란 특정한 시기에 사회구성원들이 선호하는 의류, 신발, 장신구 등 복식의 창조적 결과물을 말한다. 2. “패션산업”이란 패션 상품 및 콘텐츠의 기획, 개발, 제조, 유통, 소비 등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의류 산업 나. 신발 산업 다. 장신구 산업 라. 직물·가죽제품 제조업

마. 디지털 패션 콘텐츠 산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3. “패션사업자”란 패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패션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검토사항

- 제정안 제1조는 패션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패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의 성장을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제정안의 목적으로 규정함.
- 다만, 이 법의 목적은 패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패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입법 목적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제 정 안	수정의견
제1조(목적) 이 법은 패션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u>정하여</u> 패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u>산업의 성장을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u>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패션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u>정함으로써</u> 패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u>그 경쟁력을 강화하여</u>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2조는 패션, 패션산업, 패션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임.
- 안 제3조는 제정안이 패션산업의 진흥에 대해 일반법의 역할을 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도록 하여 다른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제정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통상적인 내용으로, 분야별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타 입법례들과 비교해볼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 패션산업육성의 소관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무임을 주장하면서 소관 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정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섬유제조 산업 기반 조성을 소관으로 하며 이에 따라 다른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제정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됨을 밝히고 있는 만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안 제3조는 소관에 관한 이견과 관련된 문제는 없다고 보임.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가 패션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디자인, 예술 등과 결합된 콘텐츠산업으로 볼 수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영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 같은 의견은 타당해 보임.

유사 입법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패션산업진흥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4조, 제5조)

1) 제정안 요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4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패션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안 제5조).

2)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4조(패션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패션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패션산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3. 창업 지원 등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5. 패션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6. 패션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패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단체 등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패션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단체 등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4조 및 제5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패션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패션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장기적 계획에 기반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패션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또한 효과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패션시장 규모와 특성 등에 대한 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그런데 제정안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단체 등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제공을 요청하는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까지 이에 따를 의무를 법에 규정

하는 것은 제정안의 각종 시책을 매개로 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제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료 제공 요청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패션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

- 한편 제정안과 같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한 입법례도 아래와 같이 있으나, 실태조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조항으로 두지 않는 아래와 같은 입법례도 있으므로 안 제4조의 한 조항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될 수 있어 보임.

유사 입법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방위산업 실태조사) ①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방위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국내외 방위산업의 시장동향 및 경쟁력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의 인적 자원, 설비투자·기술수준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수주·생산·매출 및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4.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산업체등,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이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문화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전문인력 양성 등 패션산업 진흥시책(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1) 제정안 요지

- 정부는 패션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패션 산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 정부는 패션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패션 상품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 정부는 패션사업자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 정부는 패션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9조).
- 정부는 패션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해야 함(안 제10조).
- 정부는 패션쇼, 박람회 개최·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 정부는 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2)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패션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 및 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패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패션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패션산업의 진흥, 해외 확산 및 체계화를 위한 조사·연구 3. 패션산업 관련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패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패션 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소재·재료 및 처리기법 등 패션 상품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진 및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창업 지원) ① 정부는 패션사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패션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해외교육활동 지원
2. 패션사업자의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3. 패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4. 패션산업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 유치
5. 패션산업과 관련한 국제행사 기획·운영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패션산업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패션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2. 패션디자인 등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전시 및 홍보 등) 정부는 우리나라 패션의 우수성 홍보와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패션쇼, 박람회 개최·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금융 지원) 정부는 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검토사항

- 제정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패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부가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 지원, 창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전시 지원, 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앞서 [표 2]³⁾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진 디자이너 지원, 패션 디자인 시제품 제작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패션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제정안에 따라 사업의 법적 근거가 신설 되는 경우 관련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예산확

3) [표 2] 패션 분야 지원 현황

	예산 (백만원)	사업수행 기관	주요내용(실적)
'23년	8,418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등	- 아이디어 기획 개발 지원 · 신진디자이너 브랜드 10개 선정, 엑셀러레이팅 교육과정 운영, 시제품 및 홍보 지원/참여 디자이너 브랜드 평균 매출 수혜 전 대비 69.4% 증가 - 창의브랜드 창작 지원 · 23개(의류 19개, 잡화3개) 시제품 제작 지원/매출액 20,591백만원 - 지속가능패션 제작 지원 · 19개 시제품 제작 지원/매출액 6,553백만원 - 해외 진출 지원 · 6개 브랜드 뉴욕 패션위크 패션쇼 개최 지원/177만 달러 계약 · 12개 브랜드 24회 해외 수주회 및 쇼룸 참가 지원/ 579만 달러 계약 · 10개 브랜드 해외 쇼룸 입점 지원/277만 달러 계약 · 패션코드 개최, 169개 브랜드 참가/362만 달러 계약
'24년	8,664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등	- 신진 디자이너 엑셀러레이팅 지원 · 신진디자이너 브랜드 10개 선정, 엑셀러레이팅 교육과정 운영, 시제품 및 홍보 지원/참여 디자이너 브랜드 평균 매출 수혜 전 대비 35% 증가 - 패션 디자인 시제품 제작 지원 · 22개(의류 20개, 잡화2개) 시제품 제작 지원/매출액 20,628백만원 - 지속가능패션 제작 지원 · 10개 시제품 제작 지원/참여 브랜드 매출액 수혜 전 대비 약 18% 증가 - 해외 진출 지원 · 6개 브랜드 뉴욕·파리 패션위크 패션쇼 개최 지원/613만 달러 계약 · 19개 브랜드 20회 해외 수주회 및 쇼룸 참가 지원/ 772만 달러 계약 · 21개 브랜드 해외 쇼룸 입점 지원/533만 달러 계약 · 패션코드 개최, 168개 브랜드 참가/352만 달러 계약
'25년	8,664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등	- 신진 디자이너 엑셀러레이팅 지원 · 신진디자이너 브랜드 12개 선정 예정, 엑셀러레이팅 교육과정 운영, 시제품 및 홍보 지원 - 패션 디자인 시제품 제작 지원 · 17개(의류 15개, 잡화2개) 시제품 제작 지원 - 지속가능패션 제작 지원 · 15개 시제품 제작 지원 - 해외 진출 지원 · 6개 브랜드 파리 패션위크 패션쇼 개최 지원 · 해외 수주회 및 쇼룸 참가 지원 · 21개 브랜드 해외 쇼룸 입점 지원 · 패션코드 개최

충 및 사업확대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안 제6조에 제5항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안 제3항제3호 중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안 제12조는 정부는 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창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앞서 다수의 조항에서 구체적 사항별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12조와 같은 포괄적인 지원 근거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신용보증 등 금융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추가로 규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라. 업무의 위탁 및 공무원 의제(안 제13조 및 제14조)

1) 제정안 요지

-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13조).
-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뇌물죄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봄(안 제14조).

2)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13조(업무의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거나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 검토사항

-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의 위임, 업무 위탁 및 공무원 의제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 다만, 업무의 대행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은 명 의와 책임, 법적 효과의 귀속 등에 있어 서로 다른 효력을 가짐. 업무의 대행은 업무의 위탁과 달리 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행정기관의 책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업무의 경우 위탁보다는 대행의 방식을 선택하여 행정기관의 명 의와 책임으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업무의 성격을 분석하여 대행과 위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따라 대행과 위탁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⁴⁾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⁵⁾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위탁 시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 제13조제3항의 경우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⁶⁾

4)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5, 740쪽 참조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문 의 처
02)6788-5376

6) 입법례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참고1

타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부처명	의견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	패션산업육성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사무로 소관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 필요
기획재정부	“패션”은 시각적 이미지를 조합·활용한 창조적 결과물로서, 기존 「콘텐츠산업 진흥법」 범위에서 지원 가능한 내용임 - 상기 조항에 근거하여 현재도 패션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국고지원 사업들을 수행 중으로, 별도 입법 필요성 낮음 - 산업부에서도 섬유산업 소관 부처로서 관련 지원을 수행 중이므로 부처간 중복지원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

협회명	의견 주요내용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 패션산업 진흥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패션산업의 진흥을 위해 관련법 제정이 시급 - 패션산업은 문화예술분야, 게임, 영화 등 콘텐츠 분야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으므로 문체부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2

외국의 패션 정책 비교 분석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행정기관	공공사업촉진국(WPA)	국민문화재국	문화·방송부	문부과학성
근거법률	예술 및 인간성에 관한 기금법, 디자인도용보호법, 브랜드보호법 등	불문법국가의 특성상 제정법이 없음. 국책사업등 구체적인 사업으로 지원		문화예술진흥기본법
감독기관 및 예산집행기관	연방예술재단(NEA)	문화·미디어·스포츠국(DCMS), 브리티시 카운실(외국과의 문화정책)	문화·방송부	예술문화진흥기금 설립
패션관련 정책	패션전문교육기관 보유 - FIT, 파슨스, 뉴욕컬렉션 개최	패션을 창조산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런던컬렉션의 국책사업화	ANDAM 프로그램 운영, 패션 디자인 전문학교 설립, 파리컬렉션의 국책사업화	패션 전문학교를 통한 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 패션산업인재교육기관(IFI), 문화복합학원, Japan Fashion Fair 개최, 섬유리소스센터 건립
박물관	박물관원조기관(AAM)	박물관·미술관위원회, 국립미술관,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의상 박물관)	○ 패션 - 국공립패션박물관, 모드와직물박물관, 의상박물관 갈리에라, 마르세이유 패션박물관, 민속예술박물관, 시농의복박물관 ○ 미술 - 루브르미술관(박물관)	일본 복식박물관 타월박물관
기타 업무활동	예술단체의 연간운영자금 또는 특정사업자금에의 교부, 개인예술가에의 조성, 예술가·예술단체에의 기술적 원조, 일반시민에의 문화정보의 제공	많은 사람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확보, 창조활동에 요구되는 최고수준의 확보, 예술산업육성	국립 문화시설의 운영과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예술가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각급 학교에서의 예술교육, 역사적 건조물의 복원·수복	아트플랜21 - 예술창조활동에의 지원, 진흥비보조금, 일미무대예술교류사업, 우수무대예술공연장려사업, 예술활동특별추진사업
기타기관	스미소니안 기구,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 케네디무대예술센터	예술협의회, 영국영화협회, 국립영화TV 학교	바스티유오페라극장, 음악 및 연극의 각 콘셀바트와르, 5대 국립극장	일본예술문화진흥회, 예술문화조성재단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원출처:패션문화산업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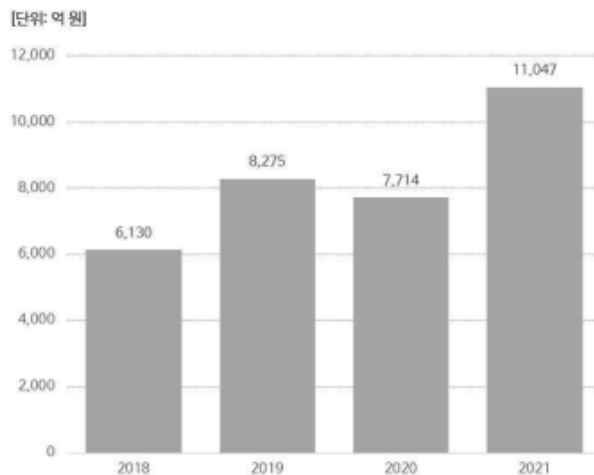
□ 한국패션시장 세분 시장별 규모 및 성장을 추이

(단위: 원)

	2021년 실적	전년비	2022년 실적	전년비	2023년 실적	전년비	2024년 전망	전년비
전체규모	43조 5292억	8.0%	47조 910억	8.2%	48조 4167억	2.8%	49조 5544억	2.3%
캐주얼복	17조 4029억	11.5%	18조 4711억	6.1%	19조 5794억	6.0%	20조 4978억	4.7%
신발	6조 6681억	9.2%	7조 1625억	7.4%	7조 4029억	3.4%	7조 5033억	1.4%
스포츠복	5조 7896억	△3.2%	6조 5007억	12.3%	6조 7072억	3.2%	6조 9690억	3.9%
남성정장	4조 4536억	14.8%	4조 8260억	8.4%	4조 7028억	△2.6%	4조 7593억	1.2%
가방	2조 9385억	△4.1%	3조 4865억	18.7%	3조 5839억	2.8%	3조 6934억	3.1%
여성정장	3조 850억	15.6%	3조 1125억	0.9%	3조 2257억	3.6%	3조 2525억	0.8%
내의	2조 668억	△1.9%	2조 3387억	13.2%	2조 867억	△10.8%	1조 8421억	△11.7%
아동복	1조 1247억	23.3%	1조 1930억	6.1%	1조 1281억	△5.4%	1조 370억	△8.1%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원출처: 한국패션산업 빅데이터 트렌드 2024/트렌드리서치, 2024.6.)

□ 한국 디자이너 패션산업 현황



● 디자이너패션산업

-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가 중심이 되어 브랜드를 운영하며 정기적인 컬렉션 출시와 수주회 중심의 비즈니스 운영 브랜드를 지칭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원출처: 환경변화에 따른 디자이너패션산업 현황조사 및 육성방안 연구/(주)트렌드랩, 2022.12.)

참고4

법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제정안	현행법에 따른 사업('25년 기준)	비고
1	실태조사(안 제5조)	-	-
2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6조)	-	-
3	연구 및 개발의 촉진(안 제7조)	-	-
4	창업 지원(안 제8조)	-형성기 디자이너 사업화 지원(9.2억원) -성장기 디자이너 창작 지원(18.4억원)	실시 중
5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안 제9조)	-성장기 디자이너 해외진출 지원(58.6억원)	실시 중
6	지식재산권의 보호 (안 제10조)	-	-
7	전시 및 홍보 등(안 제11조)	-	-
8	금융 지원(안 제12조)	-	-

문화체육관광부 제출